

# 대구의료원·서산의료원,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개시

- 장애친화 시설·장비 갖추고 수어통역서비스 등 제공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대구의료원(대구광역시 서구 소재)과 서산의료원(충청남도 서산시 소재)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개시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남도 내 첫 사례로, 해당 지역의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.

대구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은 장애친화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,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. 또한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.

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이번 운영 개시로 대구광역시와 충청남도에서 장애인의 조기질환 발견과 건강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<붙임>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 개요

담당 부서	장애인정책국	책임자	과 장	임현규 (044-202-3190)
	장애인건강과	담당자	사무관	이지연 (044-202-3198)

□ **사업개요**

- (목적)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보장하여 장애인·비장애인 수검률 격차 해소,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
- (지정기준)

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11개 시설: 「장애인등편의법」에 따른 시설별 세부기준과 별도기준 1~3개 적용  <sup>①</sup>주차구역, <sup>②</sup>매개공간 접근성, <sup>③</sup>주출입구, <sup>④</sup>안내표지 등, <sup>⑤</sup>승강기, <sup>⑥</sup>경사로, <sup>⑦</sup>계단, <sup>⑧</sup>접수대, <sup>⑨</sup>내부경로, <sup>⑩</sup>화장실, <sup>⑪</sup>경보·피난설비</li> <li>* 「장애인등편의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</li> </ul>
탈의실	▪ 휠체어 회전 공간, 바닥, 손잡이, 수납 공간, 경보장치, 호출장치 등 규정
인력	▪ 의사소통, 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을 두되 수어통역사(위탁 가능) 1명 이상
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9종: 장애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함</li> <li><sup>①</sup>휠체어체중계, <sup>②</sup>영상확대비디오, <sup>③</sup>점자프린터, <sup>④</sup>대화용 장치, <sup>⑤</sup>장애특화 신장계, <sup>⑥</sup>특수휠체어, <sup>⑦</sup>이동식 전동리프트, <sup>⑧</sup>성인기저귀 교환대, <sup>⑨</sup>이동형침대</li> </ul>

□ **지정현황: 총 112개소('24. 12월 기준) ※ 운영 현황은 '25. 10. 1. 기준임**

- '18년~'23년 공모·지정기관: 30개소(22개소 운영 중)
- **당연지정기관\***(지방의료원, 적십자병원 등): 82개소(1개소 운영 중)
- \* 「장애인건강권법」 개정('23. 12. 14. 시행)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되어, '26.12월까지 지정기준 충족 필요

□ **지원내용: 시설·장비비(지정 첫해), 검진가산수가(운영 개시 후) 지원**

- (시설·장비비) 개소당 167.5백만원
- (검진가산수가) 중증장애인 1인당 70,000원

<검진가산수가 변동 내역>

구분	'20년 이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
검진비용	26,980원	27,760원	37,770원	50,350원	62,920원	70,000원